

제1절 중국의 저작권법

I. 중국의 저작권제도

중국은 1986년 4월 12일 민법통칙을 제정하면서 지적소유권에 개괄적인 규정을 두었고(민법통칙 제118조), 이어서 1990년 9월 7일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저작권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해 저작권법 실시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이어 베른협약 가입에 따라 1992년 10월 30일 세계저작권협약실시규정을 반포하였으며, 2001년 10월 27일에는 WTO 가입을 앞두고, 그간의 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법의 시행에 따라 2001년 12월 20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이 것을 폐지하였으며, 2002년 8월 2일 새로운 저작권법 실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II. 중국 저작권법의 특징

중국 개인, 법인, 기타 단체는 해당 저작물의 발표와 상관없이 그 저작물의 완성과 함께 저작권을 취득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중국은 이미 1992년에 베른협약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조약당사국 국민의 저작물도 중국 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중국에서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며, 저작권 침해분쟁이 있을 때 침해자의 과실과 저작물 창작년월일 등을 추정하게 하는 법률적 효과에 그친다.

"법에 의하여 출판 및 전파가 금지된 작품" 저작권보호대상에서 제외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한 내용의 서적에 대하여 출판과 배포를 금하고 있는 예는 적지 않지만, 아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예는 극소수로서 콜롬비아의 1971년 저작권법 정도가 그 예로 들어진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사용자가 아닌 저작자에 귀속

우리의 경우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 사용관계의 존재, 업무상 작성, 법인 등 명의로 공표 등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저작권은 법인 등의 사용자에게 귀속되나, 중국의 저작권법은 공민 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보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권을 갖도록 하고 그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처럼 계약서상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거나,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갖는다.

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락계약의 형식을 서면계약으로 강제

우리는 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락계약 형식을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중국은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락계약의 형식을 서면 계약으로 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 단체의 권리능력 인정

중국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중국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비법인 단체)의 작품은 발표 여부를 막론하고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

여 비법인 단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저작권양도계약서 기재사항

- 저작물의 명칭
-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 및 지역범위
- 양도가액
- 양도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
- 위약책임
- 계약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 약정 내용

저작권독점사용허락계약서 기재사항

- 사용을 허락한 권리의 종류
- 사용을 허락한 권리가 독점사용권인지 또는 비독점사용권인지의 여부
- 사용을 허락하는 지역의 범위 및 기간
- 보수 기준과 방법
- 위약책임
- 계약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 약정 내용

III. 저작권 보호 방법

중국 내 저작권의 조기확보

중국에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조기에 저작권을 등록을 신청한다. 이때 전문가를 통하여 비용, 기간, 절차 등에 대한 중국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진행한다.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홍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중국에서 등록한 후 해당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만 중국사업자들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업관리 의지를 인지할 수 있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상담을 해오기 시작한다.



중국시장 현황 및 법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중국시장 진출의 초기와 장기에 대한 신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국파트너와의 정확한 관계설정이 아주 중요하다. 사업초기의 관계설정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엔 장기적인 중국사업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명확한 계약체결과 계약에 따른 확실한 사후관리가 담보되어야만 중국에서 장기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불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불법사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통한 경고서한 발송, 해당기관에 고발, 법원기소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법적인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어 사업확장이 가능하다.

IV.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침해유형

중국 저작권법상 침해행위의 11가지 유형

- 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 ② 공동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공표하는 행위
- ③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
- ④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 곡해하는 행위
- 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 ⑥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 제작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각색, 번역, 주석 등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⑦ 타인의 저작물을 보상하기로 하고 사용한 후 보상하지 않는 행위
- ⑧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제품을 대여하는 행위.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⑨ 출판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한 도서, 정기간행물의 판형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 ⑩ 실연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의 실연을 현장으로부터 생중계 또는 공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그 실연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
- ⑪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침해구제

(1) 민사구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인 배상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실제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의 불법소득을 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배상금액에는 권리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도 포함된다(저작권법 제48조 제1관). 만약 저작권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내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인민폐 50만 위엔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제2관).

저작권자는 침해행위가 있거나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9, 50조).

(2) 행정구제

저작권 권리침해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여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정지케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 ① 권리침해행위의 정지 명령
- ②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권리침해물품을 몰수 폐기
- ③ 과태료 부과(보통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이고, 불법소득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폐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36조》)

- ④ 침해결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침해제품을 제작하는데 제공된 주요 자재, 공구, 설비 등도 몰수할 수 있고, 형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저작권법 제47조)

종전에는 위와 같은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침해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3) 형사구제

저작권법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① 형법 제217조

행위 유형 영리 목적	벌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문자저작물, 음악, 영화, 텔레비전, 녹화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저작물을 복제 발행한 경우 - 타인이 전용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한 경우 - 녹음, 녹화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제작한 녹음, 녹화 저작물을 복제 발행한 경우 - 위작의 타인서명 미술저작물을 제작, 판 매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 벌금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4) 저작권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약정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調解) 또는 중재, 기소(저작권법 제54조)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은 계약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소송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소송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어느 나라의 어느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중국의 상표법

I.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

중국의 상표 보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정한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차를 통해 인정된 유명(馳名)상표에 대해서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보호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논의는 1986년에 중국이 ‘과리협약’에 가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1993년 개정된 상표법에 이를 반영하여 기만수단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6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유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규정’을 공포하여, 유명상표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2001년 개정 상표법은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규정을 처음으로 신설하였고, 2003년 4월 17일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종전의 ‘유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규정’을 폐지하고 ‘유명상표 인정과 보호규정’을 공포하여,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제도를 완비하였다.

II. 상표권의 보호방법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쳐 모방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이의신청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상표법 제41조 제2항).

취소청구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하면 되는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상표가 유명상표일

경우에는 5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위 이의신청 이유 외에 “해당 상표등록이 기만적인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되었음” 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 41조 제1항).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 청구 역시 상표평심위원회에 하며,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셋째, 상표의 미사용이나 상표의 변형사용 등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청구할 때(상표법 제44조).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면 상표국이 제재를 가한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이러한 잘못된 사용을 상표국에 설명함으로써 상표국으로 하여금 등록 상표의 취소 절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취소의 신청은 심판 절차는 아니며 상표국이 고유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처벌 절차이다. 따라서 상표국이 상표를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불복할 수는 없다.

만약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한번의 상소가 가능하다.

Ⅲ. 상표권 침해와 구제

1. 상표권의 침해유형

〈상표일반위법행위〉

등록상표의 사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임의로 변형하는 행위-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 상표권을 임의로 양도하는 행위-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는 행위- 상품을 조잡하게 만든 뒤 좋은 품질인 양 위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미등록상표의 사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행위- 상품을 조잡하게 만든 뒤 좋은 품질인 양 위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상표를 등록한 뒤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 표지를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상표사용허락계약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품에 사용권자의 명칭과 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사용권을 상표국에登記하지 않는 행위- 상표 표지의 불법 인쇄 또는 구매행위

〈상표침해도용사건〉

상표 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명백히 알고 판매하는 행위
상표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거나 명백히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 - 동종,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문자, 도형을 상품의 명칭이나 상품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큰 행위 -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하여 고의로 창고저장, 운송, 우편발송, 은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

제3절 세법

한국의 저작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세법 또는 한국세법에 따라 양국에서는 과세 관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부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중국측에서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에는 크게 부가가치세, 영업세와 같은 거래세와 법인세와 같은 소득세 및 기타 다양한 목적의 세금들이 있다. 중국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제도로서, 주로 재화의 거래에 부과하는 증치세(增值稅)와 주로 용역의 공급에 부과하는 영업세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법인세)로 나뉜다.

수출자는 세금납부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을 공제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을 감안할 때, 세금납부영수증의 교부 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세법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기존세제의 결함과 폐단을 수정한 새로운 세제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세제의 주요한 특징은 통일세법, 공평과세, 간편한 세제, 합리적인 과세권의 배분과 세수의 분배, 재정수입의 보장 등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세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신세제의 주요 특징은 국가가 세수입법권, 징수권 및 관리권을 포함하는 징세권을 지방정부의 등급에 따라 달리 배분하는 분세제(分稅制)를 도입하였

다는 점이다. 이 분세제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세수를 중앙세, 지방세, 중앙지방공유세로 나누고 중앙세와 지방세 세수체계를 건립하여 세수를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서 각각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세제의 실시로 인하여 세수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세무기관에서 분별하여 징세가 이루어지므로 납세의무자는 두개의 세무기관에 세무등기, 납세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두 세무기관에 의한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II.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관련 조세제도

현행 중국의 조세에 있어 29종의 세목이 있으나 그 중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관련 주요 법률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증치세잠정조례, 소비세잠정조례, 영업세잠정조례, 수출입관세조례, 자원세잠정조례, 도시부동산잠정조례, 토지증치세잠정조례 부동산취득세(契稅)잠정조례, 농업세잠정조례 등이 있다. 본 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 직접적 영향이 비교적 많은 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소득세(법인세)

(1) 개요

1991년 4월 9일 중국정부는 그 동안 기업의 형태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를 통상 ‘외상투자기업’ 또는 ‘3자기업’ 이라 칭함)과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단일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

稅法)’을 제정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같은 해 동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간의 경쟁격화 국내기업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평한 사업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율되던 것을 통합한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새로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제정된 기업소득세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기업소득세율이 25%로 하향 조정된 것과 그 동안 시행되던 세금감면우대제도가 일부만 남고 대부분 폐지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세율 및 조세의 감면

- 세율은 중국 국내에 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였는지에 따라 상이
-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사에 대한 기업소득세율: 33%(국세 30%, 지방세는 3%), 2008년 1월 1일부터 25%
-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취득하는 중국원천소득의 이윤(배당), 이자, 특허권실시료, 저작권사용료 등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율: 10%, 2008년 1월 1일부터 20%(시행과정에 조정될 가능성있음.)
- 2008년 1월 1일부터영세기업은 20%, 하이테크기업은 15% 우대세율 적용
- 2008년 1월 1일부터생산형, 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혜택 폐지 단, 기존 세제우대 기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5년간 과도기 설정
- 경제특구, 상하이푸동신구내 신규설립 하이테크기업, 서부대개발지역에 진출한 장려업종 기업은 우대조치 유지
- 농림목어업, 기초시설투자에 대한 세수우대혜택 유지
- 창업투자기업 및 환경보호, 에너지수자원절약, 안전생산 등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세수우대혜택 확대

기업소득세 감면기간(2008년부터 폐지, 기존우대기업 5년간 유예)

경영기간	대 상	감면기간
10년이상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	2년 면세 3년 50%감면
	경제특구 소재의 투자액 500만달러 이상 서비스업 종사 외국인투자기업	1년 면세 2년 50%감면
	高新(첨단)기술개발구의 고신기술 기업으로 승인 받은 합자기업	2년 면세 이후 15%적용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2년 면세 3년 50%감면
15년이상	해남경제특구 소재의 인프라건설 및 농업개발 종사 외국인투자기업	5년 면세 5년 50%감면
	항만, 부두건설 종사 합자기업	
	상하이 푸둥신구소재 인프라건설 외국인투자기업	

2.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1) 개요

증치세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 용역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2) 세율

기본세율(17%)

구분	기본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세율	17%	13%	0%

적용대상	원유, 암염, 가공·수리 및 정비 용역, 납세의무자가 판매·수입하는 상기 화물 이외의 기타 화물	농산품, 식량 재가공품, 식용 식물유, 수돗물, 난방·증기·온수 및 냉방,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주거용 석탄제품, 도서·신문·잡지, 사료,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농업용 필름, 금속광물 제품, 비금속광물 선풍제품, 석탄	수출화물
------	---	---	------

일반납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공식

납부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출액 X 적용세율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매입액 X 적용세율

- 소규모납세자

소규모납세자(과세특례자에 해당)란 재화 생산 또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및 화물생산 또는 과세용역 제공이 주가 되며 재화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납세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00만위엔 이하인 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연간 매출액이 180만위엔 이하인 자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간이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가액(매출액) X 6% 또는 4% (매입세액 공제 불허)

※ 4% 적용: 연간과세매출액이 180만위엔 이하인 도소매업 소규모개인사업자

3. 영업세

(1) 개요

영업세는 중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세대상의 용역, 무형자산(사용권, 실시권 포함)의 유상양도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영구적인 사용권 및 증여 포함)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그 과세 대상에는 9가지 세목이 있으며 일률적으로 비례세율을 택하고 있다. 증치세와 다른점은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2) 세율

영업세 세율표

과세대상	과세범위	세율
교통운수업	육상, 수상, 항공, 도관운수, 하역 및 운송	3%
건축업	건설, 설치, 보수, 장식 및 기타 공사	3%
금융·보험업		5%
체신·통신업		3%
문화·체육업		3%
오락·유흥업	노래방, 무도장, 룸싸롱(나이트클럽, 단란주점 포함), 음악다방(음악감상과 함께 차, 커피, 주류, 기타 음료수 제공), 당구, 골프, 볼링, 오락(사격, 사냥, 승마, 오락기, 양궁, 번지점프,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지구 등)	5~20%
서비스업	대리업, 호텔, 음식점,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등	5%
무형자산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실용신안, 의장 포함),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권의 양도	5%
부동산판매	건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판매	5%

- 1997년 1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 8%(기존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던 것을 지방과 중앙이 각각 5%, 3% 징수)
- 2001년 5월 1일부터 오락유흥업 20%
- 저작권양도: 면세
- 컴퓨터프로그램수출외국기업: 면세

4. 개인소득세

(1) 개요

외국인이라도 중국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한국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 중국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1년(182일) 미만 거주자는 중국 국내의 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원천소득에는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소득, 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특허실시소득,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이 있다.

(2) 과세소득의 종류 및 세율

가. 임금 및 급여소득

(누진적용)

과세대상 월소득액(위엔)	세율
500 이하	5%
500 초과 ~ 2,000 이하	10%
2,000 초과 ~ 5,000 이하	15%
5,000 초과 ~ 20,000 이하	20%
20,000 초과 ~ 40,000 이하	25%
40,000 초과 ~ 60,000 이하	30%
60,000 초과 ~ 80,000 이하	35%
80,000 초과 ~ 100,000 이하	40%
100,000 초과	45%

※ 외국인의 매월 과세대상 소득액 = 임금 및 급여소득 - 4,800위엔

나.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실시료, 이자, 배당금, 재산임대,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상금, 상금당첨, 복권당첨) : 10%

- 1회의 용역보수소득이 20,000위엔 초과 ~ 50,000위엔 이하일 경우

50% 가중 징수, 50,000위엔 초과부분은 100% 가중 징수

-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실시료 및 재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매회 소득이 4,000위엔을 이하일 경우 800위엔의 비용을 공제하고, 4,000위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20%의 비용을 공제한 후 세액 산출

- 원고료의 경우 납부세액의 30%를 감면
- 재산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 산출 시 비용 공제

(3) 신고납부

- 임금 및 급여는 월별 계산하고, 익월 7일까지 신고 납부
- 연봉제인 경우 납세자의 임금 및 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연말 정산 또는 매월 정산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우선 매월 수령하는 기본 급여에서 4,800위엔(외국인의 경우)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예납
- 연말에 성과급 수령한 후 당해 연도의 소득 전부를 합산한 금액에서 다시 월 평균 소득과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예납한 세액과 비교해 차액 정산
- 개인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액이 12만위엔 이상이거나, 2곳 이상에서 임금을 수령하거나,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원천징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별도로 납세신고